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(방문)

1. 이용자 대상 및 모집방법

- 1)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법의 규정에 따른다. 이용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, 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.
- 2) 기초생활수급권의 경우 관할 시군구청의 이용결정이 통보된 자
- 3) 모집방법 : 직접방문 또는 면담, 전화상담, 홈페이지, 홍보 팜플렛의 활용,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지역사회조직망을 통해 홍보, 모집한다.

2.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1) 계약기간

-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. 단,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때에는 그 기간은 등급판정 인정기간으로 한다.
-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.
- ③ 계약 당시 등급판정서의 인정기간이 1년 이상이면 계약자의 동의하에 계약기간을 인정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.

2) 계약목적

- ① 이 규정은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,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- ②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이용자 본인이 치매,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신원인수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.

3)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=> 별첨 자료 참조

4) 신원인수인(대리인)의 권리와 의무

① 권리

- 이용자의 건강 및 생활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
- 이용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해 센터에 건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
② 의무

- 이용자에 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
-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
-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서비스 제공기관에 통보

-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통보
- 기타 서비스 제공기관의 협조요청 이행

5) 계약해지 요건(계약서 기준)

①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-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제4조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나 신원인수인의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
-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

② 서비스 제공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
-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-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-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때
-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
-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

6) 계약의 해지

① 이용자(신원인수인)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.

② 서비스 제공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.

7) 재계약

-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- ②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
- ③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
- ④ 기타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이 필요한 경우

3.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

- 서비스 제공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(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함)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전까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4.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

- 이용자의 심신의 상태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, 서비스 세부내용은 자체 케어플랜에 따른다. 국민기초생활보장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서비스(급여) 내용 및 비용은 월 일수와 등급에 따라 조정, 적용된다.

- ① 신체활동 지원 : 세면도움, 구강관리, 식사도움, 몸단장, 옷갈아입히기, 머리감기기, 목욕도움, 화장실 이용하기, 이동도움, 체위변경,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
- ② 인지활동 지원 : 인지자극활동,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
- ③ 정서지원 : 말벗, 격려 등
- ④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: 외출시 동행, 일상업무 대행, 식사준비, 청소 및 주변정돈, 세탁 등

5.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,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

① 배상책임

- 장기요양요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- 장기요양요원의 학대(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 학대 및 같은 법 제 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)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,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- 서비스 제공기관은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② 면책범위

-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
- 장기요양요원이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-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-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선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르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용자(신원인수인)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.